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52
------	-----

2009. 02. 11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2월 1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를 이행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의장(시장), 부의장(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평생교육진흥 추진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연구 등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확보 9억원
- 합 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8.10.16 ~ 2008.11.5)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명)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2008. 2. 15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sup>1)</sup>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 “평생교육”의 일반적인 개념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모든 교육을 말하며, 법적인 개념은 평생교육법 제 2조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의견(안 제4조)

- 「평생교육법」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 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임.
- 이 중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평생교육분야 예를 들면 청소년 대안학교, 직업 전문교육, 노인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중복적인 기능에 대한 조정 및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발적이고 많은 평생교육 기관<sup>2)</sup>들을 잘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기적인 협의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표 1 ]

서울소재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분류

☞ 서울소재 평생교육기관수 : 1,181개소

(단위 : 개소)

학교형태	원격교육 시설형태	사 업 장 부 시설	시민·사회단 체 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 부 설	지식인력 개발기관 등
6	690	47	38	4	55	341

☞ 평생교육기관 분류현황

분 류 기 준		평 생 교 육 기 관
공공 평생 교육 기관	학교부속	○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전담형	○ 3대 전담 평생교육기관(자치구·교육청 평생교육관(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공공인력개발기관(공무원 연수원, 인력개발원 등) 및 직업학교
	복합형	○ 시·군·구 구민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 여성발전센터, 노인평생교육기관(노인대학, 노인교실 등)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회복지기관
민간 평생 교육 기관	비영리형	○ 학력인정시설 ○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영리형	○ 문화센터 ○ 전문학원(기술 및 전문영역) ○ 사이버학원 및 사이버교육원 ○ 민간산업교육기관 및 기업체 연수원

나. 평생교육진흥사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의견 (안 제5조)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 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1,181개소나 되며 분류 기준처럼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들 기관들을 선별하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2) 서울소재 평생교육기관수 및 분류현황은 2008.12월말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록기관수이며 분류기준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수요에 대비하여 지원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재정분담, 교육청과 자치구 등의 역할분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6조까지)

- 「평생교육법」 제12조에 의거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구성과 심의사항, 임기, 해촉 사유, 의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이중 안 제9조 제 2항 부의장과 관련하여 부의장의 경우 필요시 의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된 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1명만으로 되어 있어, 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지원체계 유지를 비롯하여 의장인 서울특별시장이 매번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추가해서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현행 「평생교육법」 제12조 제3항3)의 개정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 안 제 13조 제 5항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기회나 임시회 대신 서면 심의·의결을 남발할 소지가 많다는 점은 물론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 회의개최와는 달리 다양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서로 교환한 후 모아진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라.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에 관한 의견(안 제17조에서부터 안 제29조까지)

- 관련법에서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시·도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시·군·구에는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하도록 하고 있어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위탁운영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의 업무, 진흥원의 조직 및 시설, 운영경비, 운영직원 배치, 수강료 및 수익금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안 제 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업무 및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각 기관간 긴밀한 연계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를 비롯하여 수익금의 운영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집행의 투명성에 철저를 기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3) 평생교육진흥법 제12조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③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라고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다. 종합의견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지식·정보의 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지식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는 학습이 가능한 평생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학습기회의 확대와 교육 참여격차 해소 등을 위해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시급하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세부적인 검토 의견에서도 적시 하였듯이 기존의 다양하고 많은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문제와 지속적으로 늘어날 행정적·재정적 지원문제를 비롯하여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문제<sup>4)</sup>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며, 평생교육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고 정보, 비용 등에서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 (2005년도)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결과 95.2%가 중요한 문제로 답변하였으며 평생교육 참여의향에 있어서는 83.4%가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참여율은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인식에 비해 실제 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